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9. 24 선고 2023가단105329 판결 [사해행위취소]

##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태욱

**피고**1. 주식회사 B

2. C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위은진

**변론 종결**2024. 8. 27.

**판결 선고**2024. 9. 24.

##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92,810,57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0.부터 2024. 7.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에서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 [제1 선택적 청구취지]

피고들과 주식회사 D 사이의 2021. 8. 5.자 '양도담보금전소비대차계약' 및 2021. 11. 15.자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그 계약의 유용합의'는 각 92,810,577원의 한도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810,5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제2 선택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3. 11.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1) 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쇼케이스 등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쇼케이스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DOCUMENT: 쇼케이스 등 물품공급계약서(이미지 생략)

나. 채무자 회사는 2021년 5월경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쇼케이스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을 모두 공급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22가단125241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2. 12. 7. '채무자 회사는 1원고에게 137,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부터 2022. 10.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21. 8. 17. 채무자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명패드, 보안리더기 등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서명패드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서명패드 8대, 보안리더기 8대를 공급하였다. 위 각 물품에 대하여 약정된 단가는 다음과 같다.

DOCUMENT: 서명패드 등 물품공급계약서(이미지 생략)

라. 위 서명패드 공급계약에 앞서, 피고 회사와 피고 C은 채권자로서 2021. 8. 5.자로 채무자 회사와 사이에 공증인 H 사무소 증서 2021년 제309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총 110개, 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 회사 및 피고 C이 취득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금전대차) 채권자는 2021. 8. 5. 300,0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21. 8. 12.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전략)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제9조(양도담보) 채무자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 사건 각 물건)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하였다.

채권자 피고 회사

C

채무자 주식회사 D

위 회사 대표이사 J

마. 그런데 피고 회사와 피고 C은 이 사건 서명패드 공급계약 직후인 2021. 8. 20.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물건에 대하여 이 법원 K로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하였고, 원고도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같은 물건에 대하여 이 법원 L로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하였다.

바. 위 각 유체동산압류에 따른 경매사건 배당이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2023년 6월경 개시되었고, 몇 차례의 유찰을 거쳐 피고 회사가 배당협의기일인 2023. 10. 5.경 배당금으로 92,810,577원을 배당받았다. 배당내역은 다음과 같다.

DOCUMENT: 배당내역서(이미지 생략)

사. 한편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일자에 피고 회사나 피고 C이 채무자 회사에 300,000,000원을 실제로 대여하여 준 사실은 없다.

아. M 주식회사는 2021. 11. 15. 채무자 회사에 200,000,000원을 영업지원금 명목으로 대여한 사실이 있다.

자. 피고 회사는 2022. 2. 21. 채무자 회사의 사업장에 POS 기계, 보안리더기 등 물품을 설치하고 채무자 회사 담당자로부터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았다. 물품들 단가는 합계 55,000,000원인 것으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 주장의 요지

### 가. 제1 선택적 청구

2021. 8. 5.경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그 무렵 채무자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C이 2021. 8. 5.자로 채무자 회사와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양도담보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 회사나 피고 C이 채무자 회사에 실제 돈을 대여한 사실도 없다. 피고 회사는 협력사라는 M 주식회사가 2021. 11. 15. 채무자 회사에 20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 피고 회사가 대여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나,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피고 회사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미리 작성하였던 위 2021. 8. 5.자 이 사건 공정증서상 양도담보계약을 2021. 11. 15.자로 위 200,000,000원의 담보를 위하여 유용하는 합의를 한 것이므로, 이러한 유용합의 역시 마찬가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위 2021. 8. 5.자 양도담보계약이나 2021. 11. 15.자 양도담보유용합의는 모두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 가액의 배상으로 원고에게 92,810,57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제2 선택적 청구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 회사나 피고 C이 채무자 회사에 실제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물건에 대한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은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이 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92,810,577원 및 이에 대한 2023. 10.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3. 제1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채무자 회사의 채무초과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피건대,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즉 이 사건 쇼케이스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은 적어도 2021년 5월경에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위 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앞서 든 증거들이나 원고가 제출하는 다른 자료들만으로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일자인 2021. 8. 5.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제2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유효한 작성촉탁과 집행인낙의 의사표시에 터잡아 작성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비록 그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익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정지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전부명령 등) 확정된 강제집행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고, 다만 위와 같이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인 집행증서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무효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등 참조).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등 참조). 다만 배당요구조차 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같은 판결 참조).

## 나.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 회사나 피고 C이 채무자 회사에 실제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는 사정이 인정되고, 그럼에도 피고 회사와 피고 C은 2021. 8. 20.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물건에 대하여 이 법원 K로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하였으므로, 당시 집행증서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집행채권자인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법률행위가 부존재하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받은 배당금 상당 금액인 92,810,577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수익에 있어서의 악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피고 회사는 장래 발생할 물품대금 등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 듯하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그러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피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협력사'라고 주장하는 M 주식회사가 2021. 11. 15.경에 이르러 채무자 회사에 2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집행증서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가 추인되었다고 할 것도 아니므로2),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물건에 관하여 이 법원 L로 경합하는 유체동산압류신청을 하여 배당요구를 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라고 할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92,810,577원 및 이에 대하여 배당협의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10. 10.부터 이 사건 2024. 7.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24. 7.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제1 선택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제2 선택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기홍**

별지

- 1) 계약서상 채무자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F'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을 보면 채무자 회사는 김포시 G에만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무효의 법률행위에 대한 추인은 쌍방이 무효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